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0가합59723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윤현철, 이지윤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3. 3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18. 10. 25.자 주채무자 주식회사 D, 대여금 1,000,000,000원, 연대보증인 C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 및 2019. 2. 15.자 주채무자 주식회사 D, 대여금 800,000,000원, 연대보증인 C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주문 제1항 기재 각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주식담보대출채무에 대한 원고의 대위변제

1) C은 2017. 10. 24.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2017. 12. 22. 주식회사 I(이하 각 여신기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기관’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株式이 예치된 자기 명의의 증권위탁계좌를 담보로 하여 주식매입자금을 각 3억 원씩 대출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2) C이 위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D의株式은 위 회사가 2018. 10. 11. 상장폐지됨에 따라 정리매매되었고, C은 이 사건 각 여신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여신기관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여신기관에게 담보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주식투자자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매매종목 부도 등의 사유로 여신기관에게 대출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C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8. 10. 12. 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여신기관에게 C의 미상환 대출금채무 총 1,246,362,8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

1)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가. 3)항의 미상환 대출채무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14. ‘C은 원고에게 구상금 1,246,362,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9. 26. 및 2019. 10. 16.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 소유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각 그 신청 다음 날 강제집행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 사건1) 및 K 사건2),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다. C의 연대보증 및 피고의 연대보증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1) 피고3)는 2018. 10. 25. D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계약상 D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1차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19. 2. 15. D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8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계약상 D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2차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C에 대하여 위 각 연대보증에 기한 1,887,700,000원의 연대보증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9. 12. 24.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7703 결정), 2019. 12. 27.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C에 대한 원금 18억 원, 지연손해금 연 4.6%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 1)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전날 D 및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4)로부터 10억 원 및 8억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각 계약일에 같은 금액을 D 또는 Q의 대표이사인 R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대여행위를 가장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전날 받은 금액을 돌려준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각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다.

#### 2)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예비적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25.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영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D가 중요한 투자자임을 고려하여 D로부터 받은 투자금 10억 원을 다시 D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9. 2. 15. Q로부터 받은 투자금 8억 원을 D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D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아울러 실제로 피고가 대여한 금액이 D의 대표이사 R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연대보증채권에 관한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C이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C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U으로부터 D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로부터 D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T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C은 이 사건 각 여신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 대하여서도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대출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여신기관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구상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채무자 C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C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C은 이사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D의 공시내용에 따라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C에 대하여 구상채무 발생 등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수익자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보아야 한다.

###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2) 원고가 2019. 9. 26. 및 2019. 10. 16.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2019. 12. 27.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채권자로서, 만약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의 무효가 확인될 경우 피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에서 그의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나.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의 무효 여부

##### 1)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41889 판결 등 참조).

##### 2)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V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D 및 C 사이에, 피고가 D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C이 D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10. 25.자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 피고가 D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C이 D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9. 2. 15.자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위 각 약정서 작성일에 피고로부터 R에게 각 그 대여금 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이 D의 운영자금확보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2, 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가 D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C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와 같은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R이 D 및 Q의 자금을 유용하고 추후 이루어질 C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에 부종하는 제1, 2차 연대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① 피고는 2018. 10. 25. D로부터 10억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다시 위 돈을 D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돈을 D의 사내이사5) 인 R에게 지급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2019. 2. 14. D의 계열사인 Q로부터 8억 원을 입금받은 후, 다음 날 위 돈을 D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돈을 당시 D와 Q의 대표이사였던 R에게 지급하였다. 즉, D 및 Q의 자금이 형식적으로 피고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R 개인에게 바로 지급된 것과 다르없다(피고는 이상의 자금 흐름에 관하여, D 및 Q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D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D가 굳이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곧바로 같은 날 다시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고, 피고가 Q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음 날 바로 D에게 대여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피고의 이러한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위에서 인정된 자금 흐름에 의하면, 피고가 D로부터 받은 10억 원 및 Q로부터 받은 8억 원은 D나 Q의 법인계좌가 아닌 R 개인에게 수표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D의 긴급운영자금으로 쓰여야 할 자금이 R 개인에게 지급된 점도 이례적이다.

③ 피고는 2018. 10. 17. D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이고, Q 역시 D의 계열사이다. 또한 R은 피고, D 및 Q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W, X은 Q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이상 위 세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금 거래는 사실상 내부거래에 해당하고 D 및 그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R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금 거래의 당사자들은 D 또는 Q로부터 피고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지급된 자금이 결과적으로 R 개인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회사는 D의 2018. 10. 11.자 상장폐지 및 원고의 2018. 10. 12.자 대위변제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2018. 10. 17. D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제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다시 그로부터 불과 18일 후인 2018. 10. 25.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제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날인 2019. 9. 15. 이루어졌다. 일련의 사건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D의 상장폐지 및 그로 인한 C의 변제능력 상실로 인하여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⑤ D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9. 4. 29. 개시되어 2019. 12. 30.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D에 대하여 변제 자체를 요구한 적도 없는바, 이는 피고가 실제 채권자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피고는 D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와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⑥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D는 이 사건 제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민수, 판사 백현민, 판사 장동규

1) 2019. 9. 26.자 C 소유의 충남 아산시 L 답 1676㎡, M 답 820㎡ 지분 10분의 2, N 전 821㎡

지분 6분의 4에 관한 강제집행사건

2) 2019. 10. 16.자 C 소유의 충남 아산시 O 답 780㎡ 지분 12분의 2에 관한 강제집행사건

3)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P이고, 2020. 8. 10. 현재의 상호(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4)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S로 2019. 2. 15.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Q로 변경되었다.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동일하나 별개의 법인이다.

5) R은 2017. 11. 3.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7. 13. 사임하였으며, 이후 2019. 2. 8. D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9. 2. 18. 해임되었다. 따라서 이 시간 제1차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D의 사내이사였을 뿐 대표이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